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안전조정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9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상정된 안건

1.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 2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2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3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3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3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3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3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3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3

(14시13분 개의)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사위원회 제1차 안전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본 위원이 국회법 제4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서 조정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14분)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예.

○김승원 위원 김승원 위원입니다.

현재 5선 국회의원하시고 국정원장을 역임하셨으며 국가를 운영한 경륜도 있으신 박지원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김용민 위원 동의합니다.

○박은정 위원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위원님, 동의 안 해요?

○박형수 위원 우리는 반대합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반대해요?

○박형수 위원 예.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박지원 후보로 추천된 저를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지원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조정위원장으로 사회 계속)

o 조정위원장(박지원) 인사

(14시16분)

○조정위원장 박지원 방금 안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지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64)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614)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37)
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14)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51)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33)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161)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14시17분)

○조정위원장 박지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법안소위원회 쟁점별 심사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앞 페이지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안은 10개의 법률안이 통합된 조정안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을 7월 8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심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것과 법안소위로 직접 회부된 법률들이 모두 합하여 10개인 상황이고 저희는 총 여덟 번의 소위를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법안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그와 관련된 개별수사권들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안에서는 현행 검사 권한 중에 영장 집행 지휘권은 그대로 두었고요, 압수물과 관련해서는 증거물 처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사경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사경은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들이 개별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97조의2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송치된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했고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하며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더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8에서는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나 재수사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경의 위법한 법령 위반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검사가 스스로 인지한 경우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요,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관에게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구와 관련해서는 재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3개월로

하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 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및 피의자 신문 녹음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여 강제수사의 절차적 통제와 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등, 즉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많은 조문이 들어갔는데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그 결정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서식을 피해자 측에 보내도록 했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했고요. 이의신청을 위해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권을 신설했고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했고 재정신청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을 열거하면서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특정 범죄로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심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아홉 번에 걸친 법사위 소위에서 각 쟁점별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자료로 의견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 법원도 그동안 충분히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조정위원장 박지원** 잠깐만요.

법무부차관님과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종전의 전체회의에서 했던 의견으로 대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회의를 달리하는 이유는 그 단계마다 새로운 쟁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종전의 쟁점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라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들이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그대로 대체하겠다고 해 버리면 안전조정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안전조정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법에 마련해 놓은 제도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차관은 의견을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저렇게 두리뭉실 얘기를 하는 것은 안전조정위원회를 마련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김승원 위원.

○김승원 위원 여덟 차례에 걸친 법안1소위에 여기 나와 있는 법무부차관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는 차장께서 나오셔서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좀 전에 법무부차관께서 여덟 차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도 강조하셨고 거기에 의견을 밝혔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취지는 그때 상세하게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무부 기관 입장을 밝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다음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김태규 위원 방금 박형수 간사께서 ‘심도 있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참 생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임위 배정받고 월요일 날 불쑥 소위 있다고 연락받고 특검법이 있으니 논의하자 해서 왔더니…… 그 내용을 제가 알고나 왔겠습니까?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현장에서 서류 보면서 했습니다.

당일 날 다음 건 논의할 수 없어서 다음에 논의하자 해서 다음을 기다렸더니 그날 밤에 또 그다음 날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그러면 오늘 또 특검법 어제 한 것 나머지 하겠구나 하고 왔더니 갑자기 안전이 바뀌면서 보완수사권 하자고 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자료를 내놓으면서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다시 얘기를 드렸더니 다행히 어제 오후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되니까 또다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니네들이 안 들어왔으니, 우리는 여러 번 했다.

이게 어떤 느낌이나면 미끄럼틀에 너 왜 안 올라오냐고 계속 잔소리를 해서 올라갔더니 가서 전후 상황 살필 여가도 없이 그냥 밀어 버리는 겁니다. 내 몸을 내가 통제를 못하게 돼 버린 거지요. 아니면 낙하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냥 집어던져 버리는 느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평생을 법 공부하면서 법과 관련된 일을 해 왔었는데 형사소송법은 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사법시험 과목에도 들어 있고요 굉장히 핵심적인 과목이지요. 그래서 법률가들이나 아니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은 금지옥엽처럼 느끼는 그러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의 거의 대부분의 조항을 다 바꿉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처리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왜 이 법을 이렇게 금지옥엽처럼 생각하고 살았을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대충 선무당들이 사람 잡듯이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요? 물론 줬습니다. 본인들은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외계에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왜 못 들어오는지 충분히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을 무조건 안 주고 왜 안 들어왔니 그리고 속기록이나 봐라, 밤새워서 이런 걸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논의를 해 왔고 이렇게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

이라면 하루이틀의 시간도 허용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그 하루이틀도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 긴 세월을 본인들은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들어서자마자 그냥 하루이틀도 못 기다리겠으니 니네들은 거기 옆에 서 있어라는 식으로밖에 저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급할까요? 지금 제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30일까지 무조건 마치기로 했다가 아니면 전당대회 전에 이것들을 모두 다 끝내기로 했다가 등등의, 결국에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당내 사정, 민주당의 정치적 이유, 그 정치적 이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니네들 의견은 필요 없다. 병풍이나 서고 있어라.

어제 저녁에 갑자기 대안이라고 내놓는데 제가 아무리 평생 법만 가지고 살아왔어도 그걸 그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게 가소롭다는 듯이 비아냥대고 빈정대고 이죽거리고 그러면서 저보고 품위를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품위를 배우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저 역시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일하고 싶고 여러분들 의사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도를 안 보이시니까 저 역시도 그런 식의 반응이 나가는 겁니다. 힘이 약한 쪽에서 먼저 도발하지는 않습니다. 힘이 센 쪽에서 너무 힘자랑을 하니까 힘이 약한 쪽에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자랑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54년 이후로 70년 만에 새로 만드는 형사소송법의 대전환점이라고 스스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단 하루이틀조차도 허용 안 할 이런 태도로 이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논의를 하고 양당 간의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들 좀 답변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는 게 상식에 부합한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법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것도 있었기도 했지만 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사정 때문이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소청 출범과 중수청 출범은 10월 2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을 처리하더라도 정부가 그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두 달 정도,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저희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상황을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예견돼 왔던 일인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넘겨 달라라고 몽니를 부리면서 법사위 보이콧하고 이제 와서 또 갑자기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잘 안 보고 오셔서 이미 논의가 된 것을 가지고 처음 보는데 어떻게 답을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대안도 기존에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다 있고 그걸 정리해서 뺄 것 빼고 수

정할 부분 적절하게 수정해서 그렇게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법무부차관이나 법원행정처장도 그동안 기관의견 다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토론할 시간을 안 준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이 시간에 토론을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처럼 하지 마시고 이 대안을 어제 처음 봤다고 하셨으면 어제부터 오늘 지금 이미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이 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토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박은정 위원까지.

○**박은정 위원**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안전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안전조정위를 신청하신 쪽에서 어떤 쟁점, 어떤 안전을 다른 이견으로 주장하시는 건지를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법사위 전체 심사일정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께 요구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안전조정위원회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전조정위를 해야 하는 그 안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그 안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국회는 학교와 달리 보충수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에 나오시지 않은 그런 귀책사유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충분히 토론할 때 두 장관님과 처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거수하시면 지명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손을 듭)

○**조정위원장 박지원** 박형수 위원.

○**박형수 위원** 제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법원행정처장님과 법무부차관님께 왜 이것이 부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와서 한번 대답을 했다고 다음 회의에서 대답 안 할 겁니까? 소위원회에서 대답했다고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한 것 참조해 주십시오. 얘기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전체회의에서 차관이라든 법원행정처장이 발언을 했어요. 소위에 오면 전체회의의 한 것 그대로 인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제도를 만든 취지와도 다른 것이지요.

왜 이렇게 제도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느냐? 사람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그것을 듣고 또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만들라고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차관 답변 태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말 많은 사항의 쟁점을 담고 있고 지금 안전조정회의가 개최되어서 논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그 많은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항목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회의 진행에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인지 제가 알지 못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설명으로 일단 같음한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입장은 이렇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진행해 가면서 또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전체 회의에서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그걸로 같음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게 맞아요?

지금이라도, 여기 핵심은 하나잖아요. 법무부차관, 여기 핵심 뭐예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안전을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당한 것인지 그로 인한 폐해는 없는 건지 법무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 증거보완권을 폐지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장님도 답변해 보세요.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의 분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고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형수 위원** 법률가의 입장으로, 더 하실 얘기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법원 역시도 형사재판에서의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잖아요. 왜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를 이렇게 다 규정을 해 놓고 법관에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심문할 수 있는 권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것 왜 했습니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적 진실이 꼭 법원에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게 형사사법절차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수사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여서 저희 법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의 의견이 왜 없어요? 형사재판 전체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 발견인데 제도를 이렇게 바꿨을 때 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거기에 의견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실체적 진실 발견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수사기관의 목표만은, 목적만은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우리 형사소송 구조 전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게 형사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 지금까지 아무 의견이 없다라고 답변해 오지 않았어요.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어떠한 점 때문에 이것 신중해야 된다, 어떠한 점은 이렇다 얘기를 해 왔어요. 왜 지금은 얘기를 못 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때와 같은……

○박형수 위원 정치권력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겁이 납니까? 대법원장도 겁박하니까 겁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때와 같은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때와 뭐가 같은 의견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검경수사권 분리든 그다음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그것은 전부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분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형수 위원 그게 어떻게 단순하게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배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권한의 배분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인권과 권리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그런 제도의 설계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경찰과 검찰 간의 권한의 배분의 문제라고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은 법원으로서, 사법부로서 무책임한 얘기지요.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고,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토론 기회에 구체적인 걸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다음 박은정 위원 한번 하시지요.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법원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4 결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럴 헌법상 근거는 없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번만 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1994년 94헌바2호, 2007헌마1468호, 2017헌바196호, 2020헌마264호 등의 결정에서

도 똑같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이 수사권과 관련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위원님이 법원행정처에서 마치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부분은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어느 수사기관에 어느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이고 행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그것은 헌법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김태규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행정처장님, 방금 간사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입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검찰조서 증거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애고 나서 형사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소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제 후배하고 통화를, 얘기를 해 본 경험으로, 그것도 몇 년 전의 경험으로 형사재판 하면서 경찰에서 바로 넘어오니까 구성요건이 뭔지도 모르고 불필요한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걸 법률가가 좀 정리를 해 주면 내가 사건 처리에 굉장히 신속하게 임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경찰에서 넘어오는, 어떻게 보면 로데이터 같은 걸 그냥 하나하나 자기가 거기서 정리를 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을.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시스템이라는 게, 형사사법시스템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족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질의를 드리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형사사법제도 하나 하나는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재판에서 영향을 다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안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수사기관의 문제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건, 물론 공식적으로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 하시겠지요. 못 하시겠지만 적어도 법률가로서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계신 법률가로서는 그러한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것들이 다소 부적절하다라는 정도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없이 그냥 일체 그건 행정…… 물론 검찰은 행정의 영역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는 행정부에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 사법부 공식 의견이 아니라도 법관을 오랫동안 하셨던 법조인의 입장에서라도 의견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형사사법시스템을 움직여 가는 데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와 있고 사법부를 대표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저희 사법부로서는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권 분장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겹칩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법조인이고 법조인 입장에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내가 어느 직역에 있든지 간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직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직역의 입장 때문에 내가 말을 못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처장님께 요청드리고 부탁드리는데 말씀은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법관을 경험하신 법률가로서 지금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후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으신가 그걸 여쭙보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의 입장을……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든 차관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처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행정처 차관님 나오셨을 때도 그랬고 법률가라면, 그리고 적어도 오랫동안 이렇게 법 실무를 해 오신 분이시면 사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아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실제 문제점을 사실은 인식하고 있고 또 표정으로 다 읽히는데도 그 말씀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차관님한테도, 차관님,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주셨지요? 수사·기소 분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원칙에 따라서 직접수사개시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송치된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이 형소법이 개정될 경우에 그 보완책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보완수사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관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소추권자, 공소권에 집중해 가지고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많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 실체에 맞는 적절한 사건 처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도, 제가 어제든 의사 비유를 들었는데 의료기록 보고 이 사람 수술할 건지 아니면 약물치료 할 건지, 퇴원시킬 건지, 통원시킬 건지, 입원시킬 건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의 그 느낌이거든요. 의사가 그만한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적어도 한 번쯤 불러서 문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막아 놓고 과연 정상적이고 옳은 판단이 나올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도 마치 지고지순한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효율

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공판부하고 수사검사하고 나눠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기관 안에 있었고 한 기관 안에서 서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수사권조차도 아니면 기소권조차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무조건 정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검사님들이 중요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법원에 와서 실제 공판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제도 차관님께서 그 말씀 하셨지요? 그러면 특검에서는 특검의 수사·기소를 왜 그렇게,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가 정의인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왜 특검은 다 붙여 놓느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김태규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한 효율성 때문에,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수사과 기소를 같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관행적으로 분리를 하면서도 실제 중요 사건에서는 같이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꼭 분리하는 것이 정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법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답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처장님께서도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못 주셨지만 차관님 역시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좀 더 당당하게 말씀을 못 주시는데, 정말 법조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법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쌓아 왔던 우리의 경험치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책임 있는 지위에 계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말씀 주시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효율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들 때문에 권한이 집중되어 왔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법조인들께서 검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다음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형사소송체계에서 갖춰 왔던 수사의 개념, 즉 범죄혐의를 확정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을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사라고 규정해 왔는데 지금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를 면담하는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설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기존의 보완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시지요?

제가 어떤 느낌이나 하면요, 멸절한 옷을 다 벗겨 놓으니까, 가리려 하니까 여기저기 누더기 끌어와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도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21년도인가부터 계속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계속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거의 몇 년 상관으로 계속 바꿉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연 법조인들조차 저것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참 심플하고 단순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한 효율적인 제도를 굳이굳이 없애다 보니까 이제 완전 누더기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과연 법조인들조차도 저걸 따라가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2, 3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관님한테 여쭙볼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형사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가 체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다 아시다시피 기본법과 기본절차법의 한 법률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하나의 실험의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국민, 각계에서 말씀을 하시듯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면 설부른 어떤 실험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숙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제가, 우리 앞에 전체회의 할 때 어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해 보고 계속 개정해 가면서 한번 바른 길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견은 ‘우리가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또 수정해 가자’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달리 이해하면 그게 어떤 식으로 비치냐 하면 그냥 한번 실험해 보고,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 보고, 형사사법을 실험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잘못된 점이 보이면 그때 또 한번 바꿔 보고 또 한번 바꿔 보자 이런 식으로 읽히거든요.

그게 실제 21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계속 국민들을 상대로, 사법기관들을 상대로, 사법 당사자들을 상대로 거의 실험용 쥐처럼 계속 실험만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실험을 하는 목적이 뭐니까? 저는 그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지요. 기존에 아주 효율적인 제도, 완벽한 제도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차관님께서 혹시 그 목적이 읽히는지, 아니면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전당대회용이다, 당권을 가지기 위한,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의 그동안의 불만들, 그러한 것들을 만족시켜 주고 지지자들의 복

수심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든가 그러한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행위가 있고 뭔가 어떤 현상들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걸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 전당대회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전당대회용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법원행정처로서는, 법원으로서는 검찰 수사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조정위원장 박지원** 알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지금 우리 형사소송제도가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그다음에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가석방 또 몰수·추징, 범죄수익 환수 등등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권한을 집중해서 준 게 벌써 70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70년이 흘렀고.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한 봉사도 일선에서는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 국민의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트는 그런 심각한 잘못을 여러 번 했다. 예컨대 소위 BBK라든가 다스 사건만 해도 검찰이 수사를 해서 알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덮고 결국에는 대통령후보자가 돼서도 안 되고 당선돼서도 안 되는 자가 당선이 되는 그런 역사적 과오도 있었고요.

또 박근혜 시절에는 십상시 사건도 있었고 국정농단 등 사건이 있었고 검찰에서 충분히 선제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해서 검찰권의 이익을, 그런 걸 계속 유지해 왔던 그런 잘못도 있고.

드디어는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권을 이용해서 대선후보가 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의 일이기도 한 자신의 처의 주가조작이라든가 또 매관매직 이런 것들을 다 검찰권으로 감추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의 일이었지요.

이게 70년 동안 똑같은 제도를 유지하다 보니 어쨌건 그런 폐해가 컸기 때문에 국민적 열망에 의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게 됐고 그것도 검찰로부터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수사, 수사권을 분리해서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는 수사에 대한 인권적인 통제와 함께 기소 여부를 한 걸음 떨어져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달라,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중에는 물론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민은 수사기관 혹은 법정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저야 매일 하는 일이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은 거의 평생에 한 번 오는 분들이다 생각하고 집중을 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확증된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한 걸음 뒤에서 영장청구도 통

제하고 기소 여부도 한 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판단하라, 그렇게 좀 효율보다는 약간 공정성,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제도에 이르게 된 건데 이것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비난만 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 비난의 많은 부분은 보완수사를 꼭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진실이 묻힌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영장청구 등 압수수색 단계부터 검찰이 사법경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때부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 또 놓치는 부분을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범죄유형마다 체크할 것들을 다 살폈는지를 남기게 해서 부실수사라든가 또 왜곡수사가 없도록 그런 제안도 드렸고요.

또 지금 저희가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수천 페이지의 기록들을 AI가 단숨에 읽고 준비서면 수십 페이지를 10분 안에 작성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가에서 AI를 개발해서 사실관계라든가 상황을 넣고 AI를 이용하면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필요한 것들을 금방 조언받을 수 있는데, 바로바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사람에게만 의존해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수사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제도를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듯한 전제하에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은 주장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지요.

지금까지는 판사복이라는 말도 있고 또 검사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건이 가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되기도 하고 불기소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또 양형의 차이가 크게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수사의 품질을 높이고 상향 평준화해서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품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런 것도 사실은 저도 계속 우리 국회에서나 사법부 또 법무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형사소송법에 큰 변화가 있다면 수사과정 전부를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증거 혹은 간접사실 혹은 양형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데이터센터에 넣고 그것에 대한 사후검증이라든가 혹은 사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투명하게 공개해서 수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라든가 혹은 부정, 왜곡, 과장 등을 검증케 하면 수사관이든 사법경찰관이든 검사든 최선을 다해서 평균 이상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검증과정에 사법경찰관도 그것을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압수수색 검증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장윤기 사건처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도 갖추어졌고 등등 예전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하고 더 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가 돼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열정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그 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저는 그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위원님께서도 법무부차관님에게 국민의 봉사자로

서, 공복으로서 열정을 갖고 이 변화된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안전조정회의는 대안이 있느냐를 위원들 사이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인데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결국에는 수사권 혹은 보완수사권을 계속 검찰에 두어야 한나라는 주장만 지금 계속하고 계셔서 제가 잘 납득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조정위에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었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정위원장 박지원 잠깐만요.

우리 소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제가 한번 기록해서 약 10분씩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토론을 했는데 김승원 법사위 간사께서는 토론을 종결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이 김용민 위원님 한 분 계시지요?

○김용민 위원 예, 맞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런데 박은정 위원님은 또 하고 싶어요?

○박은정 위원 아닙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만하세요.

○김태규 위원 저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아까……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만하세요.

○박형수 위원 아니, 저도 아까 조금밖에 못했어요.

○김태규 위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승원 위원 같은 말씀이지 않아요.

○김태규 위원 예, 김승원 위원님……

○김승원 위원 또 전체회의하실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김태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조용히 하세요.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무부차관님이라는 토론을 아주 오랫동안 해서 처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형사사법시스템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만 강조되는 것은 위험하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옛날에 원님 재판하는 것처럼 혼자 다 하면 제일 빠르지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인권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얼마나 많이 해 왔고 그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기소와 재판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추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강조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필요는 하겠지만 그게 전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201조7항에 구속과 관련해서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 피의자 면담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 요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245조의13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인데 여기에도 검사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등, 특히 피의자가 문제인 건데 피의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법에서는 수사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동석하고 싶은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규정에는 빠져 있는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석상으로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시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형사 피의자는 헌법상 당연히 무죄 추정이 되고 진술거부권이 있고 그다음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해 놓으면 더 명확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마 법원의 그동안의 실무를 보면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 조력권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본인이 희망한다면 당연히……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희망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차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법무부차관 이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지금 당사자의 권리가 수사 절차로서 규율이 되어 왔는데요. 변호인 선임권을 비롯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면담의 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등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인 조력권 등등은 명문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용민 위원** 예, 오히려 명문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저는 이 정도 질문을 했고요. 이 부분 명문화할지 여부는 수석전문위원님께 지금 질문 하면 답을 하시기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그냥 의견제시 정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꼭 하고 싶은 박은정 위원……

○박형수 위원 저도……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리고 박형수 위원……

○박은정 위원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

○김태규 위원 그러면 저를 좀 잠시만, 길게 안 할 겁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김 위원도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

지금 야당한테 인심 쓰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이럴 때 쓰십시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안전조정위원회의 취지는 토론 기회를 한두 번 주자라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조정위원회는 양당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원내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최장 90 일 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하라는 제도가 안전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것은 제가 결정할게요. 제가 진행할게요.

○박형수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러니까 드렸는데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실 때 토론을 한 번, 10분을 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충분히 의논해야지요.

○조정위원장 박지원 말꼬리 잡는 거예요? 말꼬리 잡자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이것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듣지 않으십니까?

○조정위원장 박지원 아니, 10분을 드렸는데 더 토론하실 분은 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박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조정위원장 박지원 아니, 여당 위원들은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하지 마라,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효과적인 진행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하라고……

○조정위원장 박지원 처음부터 그렇게 박형수 위원이 꼬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박형수 위원 아니요, 이것은 안전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박지원 하세요. 그러나 회의 진행은 제가 해요.

○박형수 위원 발언은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하시라니까. 발언하세요.

○박형수 위원 발언 제가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왜 자꾸 끼어드십니까?

○조정위원장 박지원 저하고 싸우지 말고 질문 있으면 토론하세요.

○박형수 위원 안전조정위원회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빨리 끝내는 것이, 지금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안전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동수로 구성했습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야당 몫에 지금 민주당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분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안전조정위원회가 가장 빨리 결정하는 위원회가 됐어요, 지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장 탈당까지 해 가지고 안전조정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전조정위원회는 충분히 토의·숙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승원 위원 끝나고 필리버스터도 할 것 아닙니까?

○박형수 위원 그건 그 절차고 이건 이 절차지요. 그 절차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절차를 다 생략하라고 합니까?

○박은정 위원 아니, 내용을 얘기하세요, 내용을.

○김승원 위원 또 무제한 하실 것 아닙니까? 다 하실 거잖아요.

○김태규 위원 발언하게 놔두시지요.

○박형수 위원 발언을 좀 합시다. 왜 자꾸 끼어듭니까?

○박은정 위원 내용을 얘기 안 하시니까.

○박형수 위원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김승원 위원 아니, 위원장님 사회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니까 그렇지요.

○박형수 위원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진짜 70여 년 된 사법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 번 사법체계를 바꿔 왔지만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뒀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대로 뒀느냐? 이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둔 것입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열망에 의해 갖고 검찰 개혁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없앤다고요. 아니,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열망입니까? 어떤 국민의 열망입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강성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는 그분들의 열망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개정합니까?

저는 이걸 충분히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전문가 공청회도 하고, 피해자들 지금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위원 다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하면 뭐 합니까?

○박은정 위원 공청회를 몇 번을 했는데요.

○박형수 위원 끼어들지 좀 마세요.

공청회를 하면 뭐 합니까? 공청회를 해서, 지금 장윤기 사건의 이런 수사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경찰이 살인마 편이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하나도 안 들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소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소를 하는 사람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체회의에서 희한한 제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게 보완수사권이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람은 공소청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사람은 원래 수사를 했던 경찰이에요. 검사가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당하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 또는 상급 수사기관에다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도 기소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를 한 경찰이나 중수청이든 어디의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직접 확인은 못 해요. 그러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야 되니까 불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피해 어디로 갑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이쪽 결론이 맞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은 검사인데 자신의 뜻에 반하는 기소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희한한,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최소한 그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지요. 그래야지 보완수사요구권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보완수사권 일체 폐지, 검찰에는 일체의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차관이 얘기했던가요? 차관님, 면담하고 사실확인하고 하는 것 이것 뭘니까? 임의수사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완수사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으니까 이런 편법을, 임의수사인 걸 임의수사 아닌 것처럼 사실확인, 면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사실확인이나 면담에서 면담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면담을 했어, 그 사람은.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면담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면담 신청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입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 오지 않으면 강제로 오게 할 수 있는 그게 수사입니다. 그게 강제수사잖아요. 그것은 막아 놓고 오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만 면담을 하고 사실확인해 갖고 결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도대체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피해 어디로 갑니까?

차관님,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결과가 되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그런 우려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을 도대체 법률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지, 면담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공백인 상태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도 이게 도대체 면담이나 사실확인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수사인지 아닌지 이것도 불명확하다, 이런

걸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무부처의 차관도 답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갖고 국민들한테 이게 법이니까 지키라고 할 겁니까?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법무부에서 일정 정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서 폐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검찰에 권한이 집중됨으로 인한 폐해는, 차관이 얘기한 것들은 직접수사 착수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부분 사라진 거예요.

아니, 표적 수사가 제일 문제였잖아요. 표적을 정할 수가 없는데, 직접수사를 못 하는데 그러면 검찰의 잘못 남용된다고 하는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표적 수사, 권한 남용이라고 했잖아요. 표적을 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권한 남용의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보완수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현재 법률에는 동일한 사실 범위를 넘어서면 아예 수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정 마음에 걸리면, 이것도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동일한 수사 내인지 아닌지 그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하게 하든지, 엄격한 권한을 통제하는 가운데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뒤야지요. 그것을 없애 버리면 결국 피해 어디로 갑니까? 국민들한테 가고 범죄피해자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좋아집니까? 가해자, 범죄자들한테 좋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를 설계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 형사소송법 이렇게 개정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좀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정 진짜 면담이나 사실확인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예를 든다라면 공판 준비 전 증인신문 절차 있잖아요. 그거라도 이용하든지 무슨 법원의 통제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지요.

○김용민 위원 그것 이미 있어요.

○박형수 위원 그것은 수사에 있잖아요. 경찰에 있잖아요, 경찰에.

○김용민 위원 아니,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요.

○조정위원장 박지원 10분이 넘었으니까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 하나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을 충분히 촘촘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김 위원님, 간단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김태규 위원 김승원 위원님이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AI 좀 도입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요즘 법원이나 검찰에서 나오는, 특히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 보면서 정말 서운하고 이건 너무하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는 법원에 한번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판결 좀 해 줬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AI와 관련해서, 김 위원님께서서는 아마 실무를 하신 지가 조금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두세 달 전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변호사를 할 때만 해도 AI가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다시 변호사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전문가용 AI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실제 많은 변호사들이나 법률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AI 지금 많이 나와 있지요? 그리고 법원 안에서도 나름대로 AI와 관련되어서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그게 판사들 판결 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문가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실제 정확도가 100% 담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말할 수 없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태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그 오류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압니다. 이렇게 괜히 AI 한번 돌렸다가 그것 출력해 놓으면 굉장히 내용도 엉성하고요, 그리고 그것 실제 판례들 하나하나 찾아보면 틀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다시 쓸 때가 많습니다.

조금 문체나 아니면 아이디어 아니면 조금 일반적이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판례 정도 빨리 찾는 정도의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실제 그게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그리고 대신 그걸로 해 가지고 모든 게 공정이 기해질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AI가 아직까지는 못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실제 제가 그렇게 써 봤습니다. 써 본 상태에서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를 믿고 지금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면서 검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은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접근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중장기 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위원장 박지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AI 문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행정처장님 잘 유념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토론을 왜 종결하십니까?

○**조정위원장 박지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존 법안1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여 1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대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합니다.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계속하게 해 주셔야지요. 안전조정위원회 취지를 좀 살려 주세요.

○**조정위원장 박지원** 조정안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축소를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집어넣었습니다.

먼저 제59조의2, 62조, 67조, 71조의2, 81조, 83조, 84조, 115조, 137조, 138조, 151조, 195조, 197조, 197조의2부터 197조의5까지, 198조, 198조의2, 199조의2, 200조, 200조의2부터 200조의6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201조, 201조의2, 203조, 203조의2, 205조, 208조, 209조, 213조, 213조의2, 214조의2, 215조, 215조의2, 216조, 217조, 218조, 218조의2, 219조, 220조의2, 221조, 221조의2부터 221조의5까지, 222조, 237조부터 243조까지, 243조의2, 244조의3부터 244조의6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희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조정위원장 박지원** 다음, 245조, 245조의5부터 245조의13까지, 246조의2, 256조, 257조, 260조, 261조, 262조, 312조, 327조, 337조, 361조의2, 417조, 428조, 460조, 467조, 468조, 470조, 471조, 471조의2, 477조, 494조 및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변호인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조정위원장 박지원** 예?

○**박은정 위원** 아닙니다.

○**조정위원장 박지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제1소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이를 통합 조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조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전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정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기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말씀 드립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경위, 속기사 여러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박지원 박은정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임시회의록